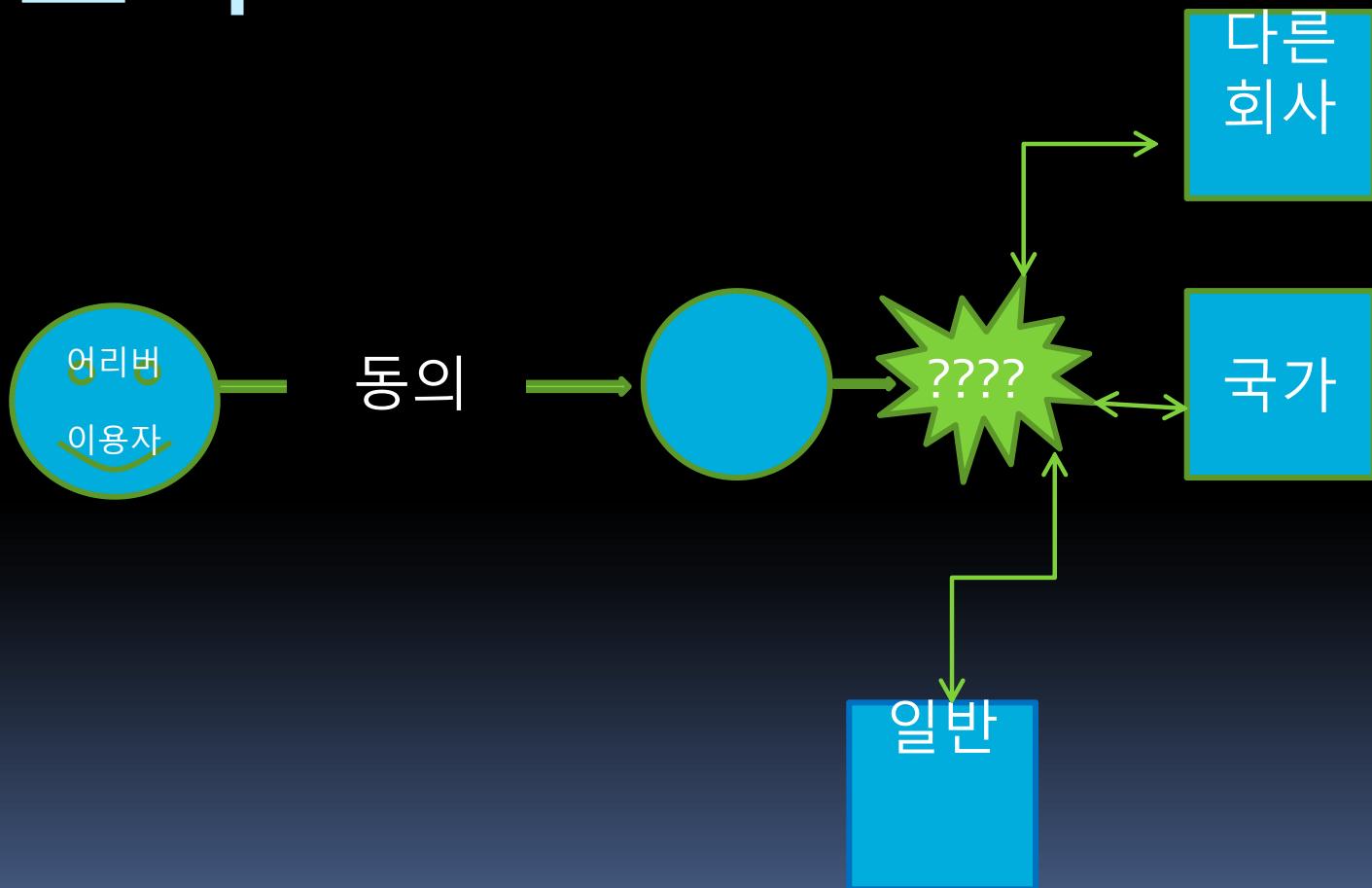


# 동의와 감시, 이용자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개인정보가 흘러가는 연결 고리



# "동의" 의 성격

## 1. 공공부문의 원칙

정당화 (justification)의 근거 중 하나

## 2. 민간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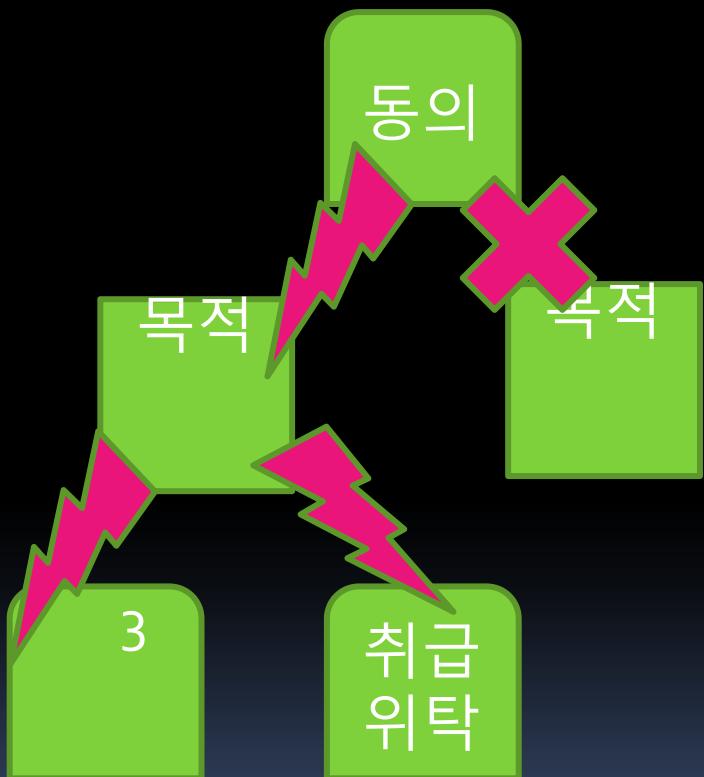
요건 (requirement)으로 간주 : 개인에게 정말  
협상력이 있는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 "동의"의 개념은 "동의+  
"로 유사하게 발전중

# OECD 8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1.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 제1항 후단)
  2. 정보정확성의 원칙 (법 제3조 제3항)
  3. 목적명확화 원칙 (법 제3조 제1항 전단)
  4. 이용제한의 원칙 (법 제3조 제2항)
  5. 안전보호의 원칙 (법 제3조 제4항)
  6. 공개의 원칙 (법 제3조 제5항 전단)
  7. 개인참가의 원칙 (법 제3조 제5항 후단)
  8. 책임의 원칙 (법 제3조 제8항)
- + 익명처리의무 부과 (법 제3조 제7항)

#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동의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건

1. 2005년 텔레마케팅 기획, 실행하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2. 자사의 부가서비스 및 외부의 부가서비스(홈닥터, PC세이퍼, 노턴플러스, 미용실) 가입유치목적으로 제3자에게 고객들의 개인정보 제공
3. 2006. 9. 28. 제일은행과 제휴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정보를 TM업체인 예드림에게 제공
4. 2006. 1. 1. TM업체인 위즈정보통신에게 PC닥터 등의 유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건에서 의 법원판결의 취지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존재
2. 개인정보의 외부 제공에 관한 구별 기준
  - . 자사 부가서비스 유치(하나TV, 전화가입홍보전화)
  - . 외부업체와 제휴하되 피고명의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가입홍보(PC 보안서비스, 유해매체차단)
  - . 자사 서비스와 혜택과 연결된 상품 가입홍보(하나카드)
- \* 2007. 7. 27. 법개정으로 “수탁자” 및 “취급 위탁 업무의 내용” 추가 및 변경시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행위의 문제점
  - . 개인정보 수집, 이용경위 : 고객에 대한 고지나 설명없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취급위탁형태로 정보 제공
  - . 개인정보 성격: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와 보이스 피싱
  - . 개인정보 관리 현황 및 유출위험 : 본사 및 자사 직원에게 업무 구분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정 일괄부여/개인정보값 비암호화
  - . 개인정보활용범위 및 빈도 : 51만명 개인정보 제공 / 도용 위험

# 민간기업에서의 동의절차

- "동의 절차" : 소비자의 입증책임
- "동의 이외 알파 부분" : 해석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음
- "정보흐름의 투명성" : 해결해야 할 문제

민간부문의 동의절차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의 핵심은 "투명성"에 있으나 이 부분은 영업비밀과 맞물려 엄격히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동의 절차만을 철저히 지키  
더라도 ... 예외 사유의 존  
재



#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제3자 제공

# 공공부문 + 인터넷사업자의 결합

TOP SECRET//SI//ORCON//NOFORN



**PRISM Collection Details**

(TS//SI//NF)

**Current Providers**

- Microsoft (Hotmail, etc.)
- Google
- Yahoo!
- Facebook
- PalTalk
- YouTube
- Skype
- AOL
- Apple

**What Will You Receive in Collection (Surveillance and Stored Comms)?**

It varies by provider. In general:

- E-mail
- Chat – video, voice
- Videos
- Photos
- Stored data
- VoIP
- File transfers
- Video Conferencing
- Notifications of target activity – logins, etc.
- Online Social Networking details
- Special Requests

Complete list and details on PRISM web page:  
Go PRISMFAA

TOP SECRET//SI//ORCON//NOFORN

#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요구 사건

1. 2004. 10. 10. 네이버 카페에 "회피연아 사진" 을 게시
2. 2010. 3. 5. 유인촌 장관에 의한 명예훼손고소
3. 2010. 3. 8. 서울종로경찰서장이 네이버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가입자	일체불상
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관성	명예훼손 용의자 수사
조회의뢰사항	대상자의 아이디와 인적사항 일체

# 법원의 판단

- 인터넷기업이 수사기관에게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정보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을 뿐더러 전기통신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수사업무처리가 원칙적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영장주의를 천명한 헌법원칙에 부합
- 동의의 의미  
"이용약관 동의" 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였거나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내 정보 통제가 적법하게도 안된다면...

" 사회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개인식별번호의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 "의 필  
요성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 원칙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 이용할 수 없  
."

(망법 제23조의 2)

## 예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긴장관계

국가안보, 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 VS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할 의무

인터넷 : 확대된 위험 vs 확대된 인권

# 프랭크 라루의 최근 보고서

1. Updating and strengthening laws and legal standards to ensure that surveillance is conducted only in a manner that is publicly accountable
2. Allowing and facilitating private, secure, and anonymous communications
3. Regula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surveillance technology
4. Educating the public on the facts and implications of surveillance
5. Making sur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and frameworks are up to the task of identifying and constraining abuses by private and public entities alike.

# 개인정보자기결정통제권

- 동의는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는 근거로서 중요
- 그러나 동의요건 자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소들 "인권"의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할 필요
-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자치라는 가치는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통제는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이어야

## 참고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 제 3 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판** **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판]** **제 16 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17 조제 1 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 2 항 제 2 호부터 제 6 호까지, 제 8 호 및 제 9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  **제 19 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판]**  **제 21 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5 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 조제 1 호 및 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 2 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 및 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 5 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판

### 판

#### □ 제 26 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 1 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 15 조부터 제 25 조까지, 제 27 조부터 제 31 조까지, 제 33 조부터 제 38 조까지 및 제 59 조를 준용한다.

## 판

#### □ 제 27 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3 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 [판] [연] 제 23 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 23 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